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독도재단 종합감사 -

2020. 10. .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처분요구일람표

1. 성과급 지급 부적정 (주의)

2.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부적정 (시정)

3. 계약원가심사 미이행 (주의)

4. 언론 홍보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5.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기관경고)

6 ♬♬♬♬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통보)

7 찾아가는 독도자료전 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성과급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독도재단
관 계 부 서	& & & &
내 용	

독도재단은 경상북도(예산담당관실)의 기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업무성과에 차등하여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경상북도 산하기관·단체 경영평가결과」에 따르면 임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의 지급대상은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으로 연봉(보수)월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연봉(보수)는 평가대상연도 기준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총액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최고-최저 등급간 지급률의 차이는 50%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총액 범위내에서 최하 등급은 정원의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지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독도재단에서는 2017. 8. 24.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로부터 2017년 경영평가 결과를 통지받고 아래 [표]와 같이 S등급(120%)부터 C등급(0%)까지 4단계로 성과급 등급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도, 최저 C등급 인원을 정원 10명의

10%인 1명 이상으로 배분해야 함에도 0명으로 인원배정한 뒤 같은 해 10. 20. 직원 10명에게 성과급 20,705천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017년 성과급 지급 인원 배분 내역

(단위: 명)

구 분	합 계	S등급(120%)	A등급(100%)	B등급(70%)	**C등급(0%)**	비 고
배분 규정		20% 이내			**10% 이상**	
의무 배분		2명 이내			**1명 이상**	
실제배분	**10**	**1**	**4**	**5**	**0**	
정당배분	10	1	4	4	**1**	

결과적으로 지급률 0%의 C등급을 받아야할 1인이 지급률 70%의 B등급을 받아 대략 1,508천 원(B등급 5인의 평균 성과급) 정도의 성과급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독도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는 성과급 지급 관계규정에 따른 등급별 의무배분 비율을 위반하여 최저등급 인원을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독도재단

관 계 부 서 $ $ $ $

내 용

독도재단은 매년 임직원의 건강관리·여가활용·가정친화 등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복지포인트 지급 등)를 운영하고 있다.

독도재단「수당규정」제18조에 따르면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 공무원 복지 포인트 규정을 준용, 월별 균등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9년도 경상북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계획(경상북도 인사과-519, 2019.01.08.)」및「2020년도 경상북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계획(경상북도 인사과-1476, 2020.01.22.)」에 따르면 공무직을 포함한 도 소속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지급점수 기준(기본복지점수 900p)을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독도재단은 맞춤형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 운영시 기본복지점수 900 포인트는 공무직을 포함하여 전체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여야 했다.

1. 2019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경우

독도재단은 기본복지점수 900점을 공무직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

하는 내용의 ‘2019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독도19-010104, 2019.01.04.)’을 수립하고, 2019년 4월 신규직원 임용에 따라 신규직원에게 2019. 5. 13.자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복지점수 재부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독도재단에서는 2019. 4. 22.자 신규 채용한 공무직 3명에게 관계규정 및 운영계획에 따른 기본복지점수 900포인트를 배정하지 않고 아래 [표 1]과 같이 400포인트만 배정한 채 채용일 기준으로 월할 계산,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공무직 3명에게 총 1,008포인트를 미지급 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9년도 공무직 대상 복지포인트 지급 내역

성 명	실제 복지포인트 지급 내역				ⓑ정당한 점수 (기본점수 900)	미지급 점수 (ⓑ-ⓐ)	비고
	배정내역			ⓐ지급점수 (월할 계산)			
	항목별		합 계				
	기본점수	기타점수					
합 계	1,200	180	1,380	910	1,918	1,008	
가	400	70	470	310	646	336	
나	400	10	410	270	606	336	
다	400	100	500	330	666	336	

2. 2020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경우

독도재단은 기본복지점수 900점을 공무직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2020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독도20-011406, 2020.01.14.)’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독도재단에서는 공무직 3명에게 관계규정 및 운영계획에 따른 기본복지점수 900포인트를 배정하지 않고 아래 [표 2]와 같이 400포인트만 배정하여 복지포인트 지급계획을 수립 및 운영 중에 있으며, 공무직 3명에게 총 1,500포인트를 미지급 한 사실이 있다.

[표 2] 2020년도 공무직 대상 복지포인트 지급 내역

성 명	실제 복지포인트 지급 내역			ⓑ정당한 점수 (기본점수 900)	미지급 점수 (ⓑ-ⓐ)	비 고
	항목별		ⓐ합 계			
	기본점수	기타점수				
합 계	1,200	810	2,010	3,510	1,500	
가	400	30	430	930	500	
나	400	670	1,070	1,570	500	
다	400	110	510	1,010	500	

한편 독도재단에서는 재단 제규정의 상위인 2019년도 및 2020년도「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의 "정규직 전환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의 처우개선 소요액(복지포인트 연 40만원)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에 따라 공무직 직원에게 400포인트를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지침의 "소요액(복지포인트 연 40만원)을 편성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전환인력에 대한 수당 제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관련 내용을 보면 "정규직 전환 정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기존 무기계약직 및 '18, '19년에 추가로 전환될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비용(복지포인트 년 40만원 등) 우선 반영"으로 본 규정의 취지는 복지포인트 연 4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처우 개선을 위해 최소 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독도재단의 위 소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독도재단 이사장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공무직 3명에게 미배정한 '2020년도 복지포인트 기본복지점수' 총 1,500포인트를 추가 배정하기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원가심사 미이행**
소 관 청	독도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독도재단에서는 세계청년 독도평화회의와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에는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3항에 따라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3조 제1항 제3호에는 1억 원 이상의 일반용역 대상사업은 경상북도에 계약원가심사를 받도록 규정 되어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는 2017. 7. 8.부터 2020. 6. 30.까지 4회에 걸쳐서 1억 원 이상의 일반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원가심사를 이행하지 않고 행사용역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에 대한 분석과 원가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부당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독도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는 1억 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원가심사를 미이행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언론 홍보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독도재단

관 계 부 서 $ $ $ $

내 용

독도재단은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한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위하여 언론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41호)」 제5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광고의 규격, 내용(광고문안 첨부), 소요 예산, 희망매체 및 그 밖에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기본 원칙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예산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독도재단 회계규정」제57조 제58조 및 제65조에 따르면 용역 등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업무담당 실·부장이 관련서류에 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수에는 물품출납원이 입회하여 절차에 따라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가는 검수가 완료한 후가 아니면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재단에서는 광고를 의뢰 하면서 관련 법령규정과 절차에 맞도록 업무처리를 명시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는 자체 제작한 행사홍보 시안을 아래 [표]와 같이 2018. 10. 19.(토)부터 2018. 10. 20.(일)까지 2일간 개최하는 제9회 대한민국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의뢰하면서 내부확인 또는 의사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광고 기간과 규격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서로 의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임의로 언론진흥재단 또는 신문사 기자에게 E-mail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하였다.

[표] ▣▣▣▣축제 행사 언론사 광고비 지출내역

행사기간(장소)	언론매체	지면광고 게재일자 (2018.10월중 3회)	광고내용	광고료(원)
2018.10.19.~10.20. (포항영일대해수욕장)	♤♤♤신문사	5일, 15일, 29일	제9회 대한민국 ▣▣▣▣축제 행사홍보	15,000,000 (1회 5,000,000)

또한 ▣▣▣▣축제 행사가 2018. 10. 20. 종료된 이후 10일을 경과하여 불필요한 홍보를 ♤♤♤신문사가 간행하는 지면에 광고물을 게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내부적 확인 절차와 검수를 소홀히 하여 게재를 하지 않아도 될 광고를 신문지면에 게재하게 되므로 지출하지 않아도 될 5,000,000원을 낭비하여 세출예산 집행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독도재단 이사장은

① 앞으로는 언론 홍보가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관련자는「독도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기관경고)

제 목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독도재단

관 계 부 서 $ $ $ $

내 용

독도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민간행사보조금 등의 예산과목으로 사업비를 편성 및 집행하였다.

독도재단「회계규정」제72조에 따르면 이 규정 및 정관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 등의 관련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제36조 및 제47조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고 세출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세출예산 과목별 기준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고,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경비를 사용하여야 했다.

1. 행사운영비(201-03)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따르면 행사운영비(201-03)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를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독도재단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행사운영비(201-03) 과목에서 집행이 불가한 연구용역비, 인건비, 민간보조금, 기타 보상금 등 33건 576백만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1] 행사운영비(201-03) 부적정 집행 내역

(단위: 천원)

년도	집행일자	집행액	지급처	적 요	부적정 이유	비 고
	33건	576,781				
2020	04.03.	14,000		독도유관기관 소장 독도관련 고지도 현황조사 및 DB구축	연구용역비	
5건	05.26.	25,000		대학 독도동아리 1차 공모 활동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06.29.	100,000		역사지리교사 독도포럼 공동사업비 교부	민간경상보조금	
	07.14	200		독도 고지도 DB구축 중간보고회 자문료	사무관리비	
	07.24.	1,000		방송통신대학교 독도학생회 활동 지원금	민간경상보조금	
2019	04.05.	26,600		대학 독도동아리 1차 사업 공모 지원비	민간경상보조금	
12건	04.25.	10,000		대학 일반동아리 2차 사업공모 지원비	민간경상보조금	
	05.09.	1,200		독도동아리 활동지원금	민간경상보조금	
	05.10.	24,350		독도로 제작 28호	연구용역비	
	08.20.	1,200		독도동아리 추가 활동지원금	민간경상보조금	
	08.30.	20,000		독도영토주권 신진학자 논문집 발간	연구용역비	
	08.30.	24,350		독도로 제작 29호	연구용역비	
	09.20.	17,900		K-독도 공모전 수상자 시상금	기타보상금	
	11.18.	24,350		독도로 제작 30호	연구용역비	
	12.23.	6,100		대학 독도동아리 우수활동 상금	기타 보상금	
	12.27.	17,000		재단 10년 수집 고지도 도록집 제작	연구용역비	
	12.31.	24,350		독도로 제작 31호	연구용역비	
2018	03.20. ~12.20.	33,581		디지털 큐레이터 급여 3~12월	인건비	
16건	05.21.	70,000		대학 독도동아리 지원비	민간경상보조금	
	07.18.	41,800		독도로 제작 24, 25호	연구용역비	
	09.28.	32,000		♬♬♬♬ 시상금	기타보상금	
	10.18.	20,900		독도로 제작 26호	연구용역비	
	11.30.	20,000		독도문화 대축제 총감독 급여	인건비	
	12.28.	20,900		독도로 제작 27호	연구용역비	

2. 연구용역비(207-01)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따르면 연구용역비(207-01)는 자치단체 업무추진에 있어 조사·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독도재단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 2]와 같이 연구용역비(207-01) 과목에서 집행이 불가한 사무관리비, 인건비, 행사운영비 등 13건 157백만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2] 연구용역비(207-01) 부적정 집행 내역

(단위: 천원)

년도	집행일자	집행액	지급처	적 요	부적정 이유	비 고
	13건	157,671				
2020	03.05.	990		도서인쇄비	사무관리비	
	03.05.	300		인건비	인건비	
	06.05.	1,980		국민 독도교재 출판 기념이벤트 개최	행사운영비	
	07.14.	60,000		안용복루트 기획취재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2019	04.19.	3,000		일본의 근대문서와 독도의 영유권 학술회의 개최	민간경상보조금	
	06.20.	21,000		동아시사의 변강 문제와 한중협력 방안 모색 학술회의 개최	민간경상보조금	
	06.26.	9,900		영토와 해양 경계관련 지역국제법 학술세미나 개최	민간경상보조금	
	08.16.	40,000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10.29.	5,000		동해바다의 수호자 안용복을 재조명하다 개최	민간경상보조금	
2018	11.17.	1,401		독도 교육홍보물 영어번역	사무관리비	
	12.,11.	1,300		도서인쇄비	사무관리비	
	12.,27.	2,400		독도사료 동해와 독도 출판 원고료 및 감수비	사무관리비	
	12.,27	10,400		도서인쇄비	사무관리비	

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따르면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독도재단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 3]과 같이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과목에서 집행이 불가한 행사운영비, 인건비, 기념품 구입 등 8건 109백만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부적정 집행 내역

(단위: 천원)

년도	집행일자	집행액	지급처	적 요	부적정 이유	비고
	8건	109,260				
2020	03.31.	3,360		일본억지주장 독도의날 제정 철회 규탄 결의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04.27.	2,000		독도사랑연주회 및 생활음악페스티발 음향장비	행사운영비	
	06.11.	80,000		울릉도 세계자연유산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2019	03.13.	3,900		독도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세미나	민간경상보조금	
2018	05.24.	4,320		독도자료전 리플릿 및 현수막	행사운영비	
	05.24.	680		찾아가는 독도전시회 수당	인건비	
	12.19.	7,000		독도사랑 결의 및 일본만행 규탄대회 리플릿 및 현수막	행사운영비	
	12.26.	8,000		2019년도 독도카렌다	기념품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독도재단 이사장은

독도재단에 대하여「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하오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독도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독도재단은 독도와 울릉도, 동해바다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국민과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리고, 독도의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매년 경북예총을 보조사업자로 ♬♬♬♬을 개최하고 있다.

독도재단 회계규정 제72조 “이 규정 및 정관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 등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 민간보조금 사업계획서 검토 소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등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자치부 보조금 질의 응답」 ‘체육대회 상품, 시상금 등 보조금 집행 여부(2014.10.6.)’에 따르면 민간보조금은 공익활동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통상적으로 기부금성 금액, 시상금(상품권),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는 편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필요시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경우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독도재단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후 사업계획이 적정할 경우 교부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독도재단은 2019~2020년 경북@@@@@@@@연합회(이하 @@@@)에서 제출한 "대한민국 ♬♬♬♬" 보조금 교부신청 시 사업계획서 소요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시상금을 포함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완조치 없이 그대로 교부결정 및 교부하였으며 【표 1】과 같이 수상자들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계획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시상금 편성 및 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년도	보조사업비	시상 계획금액	시상금 지급액	비고
합 계	120,000	64,000	24,000	
2019	60,000	27,000	24,000	
2020	60,000	32,000	-	사업 추진중

자료 : 독도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2. 민간행사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2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도지사는 실적보고서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독도재단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보조목적의 위배 여부, 보조금의 적정집행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에서 제출한「2019년 제9회 대한민국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 【표 2】와 같이 독도재단의 승인없이 당초 계획에 없던 문화탐방비, 인쇄비, 식대비 3건, 7,115천 원을 집행하였고, 상품비는 당초 계획보다 2,689천 원(증 57.2%) 추가 집행하였으며, 시상금 등 6건에 대해 9,804천 원 감액 집행하였다. 또한, 상품비[1] 및 액자제작비[2] 등 물품구매 증빙자료에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만 첨부되고 사진대지나 검수조서 등 납품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게 작성되어 있다.

그런데도, 독도재단에서는 @@@@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의 부당 집행건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조금 정산 확정 통지도 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1) 특별상(외장하드디스크) 34개, 4,199천원, 특선(책자: 강치의 바다) 290개, 3,190천원

2) 족자 5개, 유화액자 4, 4절 액자 20개, 판넬 2개, 포장 2개, 총 1,455천원

[표 2] 2019년 제9회 대한민국 ♬♬♬♬ 변경 현황

(단위 : 천 원)

세부항목	당초 예산(A)	정산액(B)	증감(C=B-A)	비율(C/A)	비고
합 계	60,000	60,000	-		
시상금	32,000	24,000	△8,000	△25.0%	
인터넷 배너 및 현수막 홍보비	5,500	5,495	△5	△0.09%	
상품비	4,700	7,389	2,689	57.2%	
액자제작비	2,006	1,775	△231	△11.5%	
작품심사 및 사무보조 인건비	8,670	7,445	△1,225	△14.1%	
우편발송	4,000	3,730	△270	△6.8%	
회의수당 등 운영비	3,124	3,051	△73	△2.3%	
문화탐방	-	2,500	2,500	순증	
수상작품집 및 상장 제작	-	3,340	3,340	순증	
시상식 및 문화탐방 식대	-	1,275	1,275	순증	

자료 : 독도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독도재단 이사장은

보조금에서 집행되는 시상금을 직접집행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합당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통보),** 앞으로 민간보조금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찾아가는 독도자료전 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독도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1.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및 타목, 제5호 나목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고 예의적으로 수의계약[3]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독도재단에서는 독도홍보버스 임대・운영 용역에 대하여 최초 협상의 의한 계약(2015.02.11.~2015.12.31.)으로 ㈜♡♡과 임대・운영 계약 이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표1]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과 수의계약 사유로 제시한 주1)-1.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와 주1)-2.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추정가격도 2천만원 초과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3) 1.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2.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표 1〕 독도홍보버스 임대·운영 용역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내용	계약금	비 고
2015	디자인, 내부인테리어, 장비(냉난방기외), 전기/조명, 장비고정, 내외부도색, 임대료(기사포함), 네비및후방카메라, 구조변경검사 등	74,470	
2016	버스 임대료, 기사급여, 차량(내외부 작업), 보험료, 주차비 등	60,000	
2017	버스 임대료, 기사급여, 차량(내외부 작업), 보험료, 주차비 등	60,000	
2018	버스 임대료, 기사급여, 차량(내외부 작업), 보험료, 주차비 등	60,000	
2019	버스 임대료, 기사급여, 차량(내외부 작업), 보험료 등	60,000	
2020	버스 임대료, 기사급여, 차량(내외부 작업), 보험료 등	70,000	

* 독도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독도재단에서는 2015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된 ㈜♡♡과 독도홍보용 차량의 내외부 작업(디자인・인테리어 작업) 등을 설치했다는 사유만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버스임대료 및 기사급여, 보험료, 주차비 등 독도홍보버스 임대・운영 용역(6-7천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사업자와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은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버스임대가 주요내용인 일반용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을 갖춘 사업자와 계약체결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독도재단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버스임대를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는 '독도홍보버스 임대·운영'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계약하여야 함에도 관련면허가 없는 주)♡♡과 부당한 계약 체결을 한 사실이 있다.

3. 정당한 채주 이외의 예산집행 부적정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제33조(지급명령의 제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지출원은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독도재단에서는 찾아가는 독도자료전 사업 운영비를 [표2]와 같이 독도홍보버스 임대·운영 용역 계약상대자인 ㈜♡♡에게 기사숙박비, 주유비, 세차비, 통행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

〔표 2〕 찾아가는 독도자료전 사업 운영비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내용	지급액	비고
2017	기사숙박비, 주유, 세차, 통행료 등	9,244	채주 ㈜♡♡
2018	기사숙박비, 주유, 세차, 통행료 등	11,960	
2019	기사숙박비, 주유, 세차, 통행료 등	14,207	
2020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등	470	

* 독도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독도재단에서는 찾아가는 독도자료전 경비에 해당되는 기사숙박비, 버스 운영비(주유비, 통행료, 세차비) 등에 대하여 운전기사, 주유소, 세차장 등에 직접 지출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귀 재단에서는 정당한 채주가 아닌 독도홍보버스 임대·운영 용역 계약상대자인 ㈜♡♡에게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4.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 및 과업내역서 미작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4]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규정에 따르면 공사·용역·구매의 경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시중노임단가 등) 등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견적가격이란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조 제4절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감정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4조 제2절 1. 계약문서에는「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제2절

4)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에는「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재단에서는 독도홍보버스 임대·운영 용역에 대하여 견적가격을 지양하고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 등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했어야 했으며, 용역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용역 내용·방법·성과물에 대한 사항 및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업내용서을 작성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위 재단에서는 아무런 검토없이 ㈜♡♡이 제시한 차량임대료, 기사인건비 등 견적가격을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였고, 일반용역 계약 시 용역계약에 대한 홍보장소, 홍보차량 운행 일수, 운영 방법, 용역수행 사항 이행사항 및 용역검수의 타당성 확인 등 과업내용서 없이 계약 체결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독도재단 이사장은

①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계약체결, 예산집행 등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관련자는「독도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